

3.22 공포, 9.23 시행 2016년 개정, 정보통신망법 핵심변화 ②

개인정보<미점검→미파기> 시 처벌강화

원문보기

① 망법고시위반→유출시 처벌강화	② 개인정보<미점검→미파기>시 처벌 강화		
<p>이전 Report 보기</p> <p>징벌적 손해배상 (시행일 2016.7.25) 32조②항</p>	<p>법 위반 사실 인지시 CPO→CEO 보고 27조</p>	<p>법 위반시 방통위가 CEO, 임원 징계 69조의2</p>	<p>위반행위 관련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이익은 몰수 or 가액 추징 75조의2</p>
	<p>법 위반시 미래부or 방통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감사가능 64조</p>		
	<p>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파기 차단 (시행일 2016.7.25) 32조의3</p>		

③ 그 외 변화들			
<p>취급위탁 규정 강화 2조</p>	<p>스마트폰앱 내 개인정보 접근통제 (시행일 2017.3.22) 22조의 2</p>	<p>개인정보 처리의 범위확대 24조의2</p>	<p>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거래금지 44조의7</p>
<p>(피싱or 파밍 등)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수집발생시 이용자에게 안내메시지를 보낼 수있는 시스템 구축 (2016. 9.22 이내 완료) 49조의 2, 부칙3조</p>		<p>(동의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해외이전 개념구체화 →제공(조회 포함), 처리위탁, 보관 63조 ②항</p>	

<p>정보통신망 해킹미수범도 처벌 →5년이하 징역 or 5천만원이하 벌금 71조</p>	<p>악성프로그램 유포자 처벌강화 →7년이하 징역 or 7천만원이하 벌금 70조의2</p>	<p>용어변경 및 통일 →취급을 처리로 용어변경</p>
--	--	------------------------------------

기존

개인정보 <미점검→미파기>시 처벌

<점검→파기>하지 않으면 범죄!
유출되지 않더라도 유출과 동일한 형사처벌 가능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항 (보유이용기간 끝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이 끝났거나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복구/재생할수 없도록 파기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1의2호 (벌칙)

(정보통신망법 29조 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

개인정보 미파기시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73조 1의2호

[이전 Report 보기](#)

과태료

<휴면기간^(1년) 종료된 개인정보>
미파기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통신망법 29조 2항

[이전 Report 보기](#)

과태료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파기절차/방법 미공개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통신망법 27조의 2

[이전 Report 보기](#)



신설&개정

개인정보<미점검→미파기>시 처벌 강화

신설

<미점검→미파기>로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이익은
몰수 or 가액 추징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32조

신설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특히 주민, 카드, 계좌)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방통위 or KISA가
삭제/차단요청할 경우
따라야 함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통신망법 32조의3

신설

위반시 징계대상자로 CEO 명시

법 위반 사실 인지시 CPO는
즉시 개선조치 → CEO에게 보고
정보통신망법 27조

법 위반시 방통위가
CEO, 임원 징계
정보통신망법 69조의2

2014.7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에서 개정예고

[이전 Report 보기](#)

개정

위반시
미래부 or 방통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감사가능

정보통신망법 64조

개인정보 미파기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므로 <CEO 리스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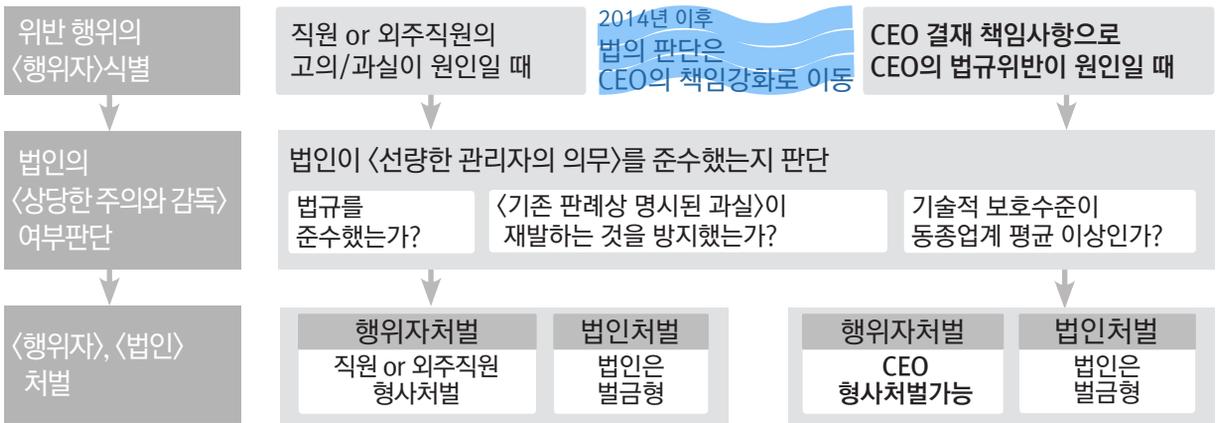
정보통신망법 75조(양벌규정)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법인 or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71조, 72조, 74조1항, 7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한다

BUT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73조 1의2호<개인정보 미파기>발생시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1. 파기절차/방법을 포함한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2. 개인정보 미파기 **6대 위험ZONE** 점검



<점검→파기> 주기적 검출→ 복구재생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불필요한 개인정보 복제 차단

↓
CPO에게 보고 → CEO에게 보고

<상세규정 보기>

조항	개정여부	내용																									
27조	신설	④ CPO는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조치를 하고 필요시 사업주 or 대표자에게 개선조치 보고																									
27조의2	기존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29조	기존	①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이 끝났거나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복구/재생할수 없도록 파기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2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2조의3	신설	① 주민번호, 계좌정보, 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통위 or KISA 요청시, ①항의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64조	기존	① 다음 경우 미래부 or 방통위는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다 1. 법위반사항을 발견 or 혐의를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존	② 방통위는 (이 법을 위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미래부 or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①항 및 ②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or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69조의2	신설	② 방통위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75조의2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조항</th> <th>내용</th> <th>처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71조</td> <td rowspan="4">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td> <td>1.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td> <td rowspan="8">5년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td> </tr> <tr> <td>2. 개인의 권리/이익,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td> </tr> <tr> <td>3.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or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td> </tr> <tr> <td>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td> </tr> <tr> <td>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or 누설한 자</td> </tr> <tr> <td>6.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or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td> </tr> <tr> <td>7. (이용자가 정정요구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td> </tr> <tr> <td>8.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td> </tr> <tr> <td>72조</td> <td>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9조 ①)</td> <td>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td> </tr> <tr> <td rowspan="2">73조</td> <td>1. (망법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기준] 위반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or 훼손한 자</td> <td rowspan="2">2년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td> </tr> <tr> <td>1의2. (보유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복구재생되지않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td> </tr> <tr> <td></td> <td></td> <td>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td> <td></td> </tr> </tbody> </table>	조항	내용	처벌	71조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1.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년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2. 개인의 권리/이익,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or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or 누설한 자	6.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or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이용자가 정정요구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72조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9조 ①)	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73조	1. (망법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기준] 위반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or 훼손한 자	2년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	1의2. (보유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복구재생되지않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조항	내용	처벌																									
71조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1.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년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2. 개인의 권리/이익,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or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or 누설한 자																										
	6.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or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이용자가 정정요구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72조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9조 ①)	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73조	1. (망법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기준] 위반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or 훼손한 자	2년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																									
	1의2. (보유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복구재생되지않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몰수, 추징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 할 수 있다.